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49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송석준 · 김선교 · 곽규택
박형수 · 조배숙 · 박덕흠
조경태 · 이헌승 · 장동혁
안철수 · 유상범 · 주진우
김예지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는 지원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고 극심한 생활난과 고립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러한 지원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보훈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저하됨으로 물론 국민들의 애국심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함.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명예수당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하려는 것임. 또한,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임을 밝히고 이법의 지원을 받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확대하고, 등록 및 결정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

라.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여양지원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킴(안 제6조의3, 제8조, 제8조의2).

마. 고궁 등 이용지원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안 제1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를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 및 유족에게”로, “참전유공자의”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사람

제3조 중 “사람은”을 “사람과 제6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6, 제10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로서”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유공자로서의”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로”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권리의 보호)”를 “(권리의 보호 및 승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유족 중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를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10조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를 “적용받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행위로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u>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u> 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u>참전유공자의</u>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u> 및 <u>유족에게</u> ----- ----- - <u>참전유공자</u> 및 <u>유족의</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 ”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중 <u>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사람</u>
제3조(적용 대상자) 참전유공자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u>사람</u> 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3조(적용 대상자) ----- ----- <u>사람</u> 과 제6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6, 제10조에 따른 <u>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u> ----- -----.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 ⑤ (생략)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 ③ (생략)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② -----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권리의 보호 및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 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유족 중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지급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 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양로지원) ① -----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
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
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참전유공
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
우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
유공자 및 배우자-----

-----.

제38조(예우의 정지) ① -----
-----참전유공자 및 사망
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
-----적

<u>받을 참전유공자가</u>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 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 ④ (생 략)	<u>용받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u>-----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